

서울시보

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003호 2010. 10. 11.(월)



**HAECHI
SEOUL**

※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한강자전거도로 (군자교지역)

기관의 장		공 람							
선 람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시민소통기획관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731-6818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0-1778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

제2010-1779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... 3

제2010-178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3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1778호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11일
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, 기본·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,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'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'을 조례에 규정함
- 나.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, 비서관,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다. 별정직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고,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
- 라.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인사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(전화 : (02)731-6622, FAX : (02)731-6053, E-mail : sach5436@seoul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1779호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11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의 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에서 ‘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’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을 삭제함

2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인사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(전화 : (02)731-6622, FAX : (02)731-6053, E-mail : sach5436@seoul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1787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0년 10월 11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규 공원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과 야영장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있는 감면 및 가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기존 조례 내용의 순서 및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푸른도시정책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-1 남산별관 4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정책과(전화: 02-2115-7520, FAX : 02-2115-7539, E-mail : biotopia@seoul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